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13010040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3.06.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8.14.

[moaksan1141@naver.com]

[깨순이 김밥]

정 보 공 개 서

[(유)대성물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0. . .

[(유)대성물류]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3-4]

[대표전화]063-222-7353

[FAX] 063-229-1141

[사업부] 063-222-7353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유)대성물류	깨순이 김밥	전주시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3-4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8.07.29	2008.07.29	김태현	063-222-7353	063-229-1141
	법인등록번호	210114-0064861	사업자등록번호	402-81-79930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상 호/이름	영 업 표 지	주 소		
대표이사	김태현	깨순이 김밥	전주시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3-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태현	063-222-7353	063-229-1141
관 계	상 호/이름	영 업 표 지	주 소		
사용인(임원)	김호인	깨순이 김밥	전주시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3-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태현	063-222-7353	063-229-114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깨순이 김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깨순이 김밥	



상 호	깨순이 김밥00점	
상표(서비스 표)	깨 순 이	등록번호:410094815000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당사는 깨순이 김밥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호남지역(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전 권역에 가맹점모집 및 관리를 당사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그 외 지역은 (주)깨순이 식품에서 가맹사업을 진행합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748,889	217,698	531,191	3,503,553	72,679	78,131
2022	678,680	217,562	461,118	3,373,270	66,817	66,554
2021	531,053	130,045	401,008	2,949,674	55,959	53,945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는 가맹사업(깨순이 김밥) 외, 식자재 도.소매를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 구성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맹사업 매출액과 식자재 도소매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추정금액입니다.

당사가 가맹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대비하여 약10%~20%에 해당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태현	대 표	2008.07~현재	(유)대성물류 대표	유통 관리
			2013.3.25~현재	깨순이김밥 대표	가맹본부 관리
	김호인	본부장	2008.07~현재	(유)대성물류 이사	업무관리
			2013.3.25~현재	깨순이김밥 본부장	가맹점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깨순이 김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깨순이 (상 표)	영업지역 내 사용	출원:2002.09.18 등록:2003.12.22	출원번호:4120020019002 등록번호:4100948150000	조승호	2013.12.22 (2013.03.25~202 3.03.25)10년간 전라남도.전라북 도 전용사용권 설정)

당사는 깨순이 상표 소유자(조승호)로부터 2013년 03월 25일부터 2023년 03월 25일까지 항



후 10년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깨순이 김밥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깨순이 김밥] 가맹사업 현황

1. [깨순이 김밥] 을 시작한 날 : 2004. 01. 28.

2. [깨순이 김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깨순이 김밥	깨순이 김밥	조정선	2004.01.05~2008.04.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2 정현빌딩 109호
깨순이 식품	깨순이 김밥	이순자	2008.04~2013.03.2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481-1
(유)대성물류	깨순이 김밥	김태현	2013.03.25~2019.11.1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184-1
(유)대성물류	깨순이 김밥	김태현	2019.11.11.~현재	전주시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산 월2길 33-4

3. [깨순이 김밥] 업종

영업표지	업종	
깨순이 김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김밥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깨순이 김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0	20	-	20	20	-	20	20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2	2	-	2	2	-	2	2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13	13	-	13	13	-	13	13	-
전남	5	5	-	5	5	-	5	5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깨순이 김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20	0	0	0	0	20
2022	20	0	0	0	0	20
2021	25	0	0	5	0	20

* 자세한 내역은 [별첨2] 가맹점 목록 참조

6. [깨순이 김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가맹본부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 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깨순이 김밥]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2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0	30,799	568	135,994	2,775	8,561	176	20곳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2							5곳 미만
대전	-							
울산	-							
세종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13	30,503	513	135994	2,775	9,398	176	
전남	5	38,242	881	79,065	1,520	8,561	219	
경북	-							
경남	-							
제주	-							

[당사에서 추정 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 액×추정비율(2.0)]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 본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깨순이 김밥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깨순이 김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	5,53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깨순이 김밥]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깨순이 프랜차이즈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80-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박효신	062-972-3311	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3.10~2023.09(갱신)	0	x	x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깨순이 김밥]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유)대성물류	가맹본부
피 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 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8,050천원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개월 소요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는 시·도지사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깨순이 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비용, 철거비용, 화장실, 정화조, 가스(도시가스)배관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보증보험 가입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6,050]				
가입비	3,850	계약체결일 후 다음날 까지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반환 시 당사의 귀책사유 정도에 따라서 공제 후 반환
교육비	1,100	계약체결일 후 다음날 까지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행사비	1,100	계약체결일 후 다음날 까지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2)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현금) 보증금	2,0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상품대금 등 각종 대금 미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예치대상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금액은 피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합계	8,050
가맹비	3,850
교육비	1,100
(현금)보증금	2,000
개점행사비	1,1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면적:33㎡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8,050				
인테리어 및 간판 (점포 실내공사)	(협력업체)	17,600	1,760	착수금 40%(계약 체결 후 4일) 중도금 40%(공사 시작 후 7일) 잔금 20%(공사 마감 일)	공사 전 계약 취소	
필수 설비 (정착물)	12구 렌치 냉동고 반찬 냉장고 김밥냉장고 2조싱크대 스탠 작업대 의자, 탁자 (협력업체)	8,800	880	가맹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설치 전 계약 취소	그릇, 집기 포함가격 냉, 난방구입 비용별도
최초공급 상품비용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¹⁾	1,650		가맹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상품 미 공급 시	상품 공급 시 반품 및 반환불가
금융비용						직접 지불하는



						비용 아님
--	--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의 경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당 220천원(부가세포함)의 비용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2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입지선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상권특성 및 주요시설 파악 → 당사 및 가맹희망자 동의 시 확정 ※ 상권 및 입지분석은 전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책임 하에 선정되며 가맹본부 가맹본부는 조언 및 입지조건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입지 선정을 요구 할 수 있음.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깨순이 김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모약산 식품, 엠에스 푸드, 씨제이, 청정원, 오투기, 일신유통, 엘리트, 태원식품, 달콤푸드, 천일식품, 풍일식품, 동덕식품 등



[세부적인물품내역은 당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가맹희망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물품내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50% 가맹점사업자50% 부담(가맹점 각각의 부담은 매출액에 따라 분담)	분담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후 14일 이내	광고 취소 시	광고가 시행되었을 시
관측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에 따라 달라짐	분담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후 14일 이내	관측행사가 취소되었을 시	
계속가맹금 (로열티)	가맹본부	월110천원	매월말일	-	후불적 성격이므로 반환 불가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제 소요되는 비용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후 1주일 이내	교육 취소 때	교육이 시행되었을 시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비용	(협력업체)	실제 소요되는 비용	간판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3-34페이지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는 자체생산물목에 한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제3자 물류 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 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연락처 : 가맹본부 063-222-7353
회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회/3월	연락처 : 가맹본부 063-222-7353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금전은 일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귀하가 운영하는 [깨순이 김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깨순이 김밥]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1,100천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2,000천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7.28]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깨순이 김밥”의 지식재산인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2.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깨순이 김밥”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깨순이 김밥”이 부담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는 “깨순이 김밥”의 상호나 상표 등 “깨순이 김밥”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깨순이 김밥”이 이미 제공한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깨순이 김밥”에게 반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깨순이 김밥”으로부터 제공받은 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깨순이 김밥”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깨순이 김밥”의 영업표지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7.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상품 및 제품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깨순이 김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깨순이 김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깨순이 김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깨순이 김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김밥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계약 해지	
깨순이 김밥			
소고기 김밥			
참치김밥			
김치김밥			
누드김밥			
치즈김밥			
참치 마요네즈 김밥			
참치 고추장 김밥			
매운 고추김밥			
샐러드 김밥			
분식류			
오뎅			
우동			
카레우동			
라면			
떡 라면			
치즈라면			
짬뽕라면			



떡볶이			
말팔량이 떡볶이			
라볶이			
칼국수			
얼큰 수제비			
쫄면			
비빔국수			
떡만두국			
김치 떡만두국			
고기만두			
김치만두			
짜장			
해물우동			
해물볶음 우동			
양식류			
돈까스			
순살 돈까스			
쫄 스파게티			
카레라이스			
오무라이스			
이탈리안 돈까스			
깨순이 스페셜			
치킨 철판가스			
고구마 돈까스			
단호박 돈까스			
한식류			
짬뽕밥			
잡채밥			
야채 볶음밥			
김치볶음밥			
새우볶음밥			
낙지볶음밥			
소고기 볶음밥			
김치찌개			
참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오징어 덮밥			
재육덮밥			
비빔밥			





돌솥비빔밥			
낙지 비빔밥			
육개장			
갈비탕			
소내장국			
청국장			
소떡볶고기			
떡배기 알밥			
김치고등어 조림			
물냉면			
비빔냉면			
콩국수			
소바			
사리추가			
공기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



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김밥류		개별통보	2019.12월 기준
깨순이 김밥	1,000	"	
소고기 김밥	2,000	"	
참치김밥	2,500	"	
김치김밥	2,000	"	
누드김밥	2,000	"	
치즈김밥	2,000	"	
참치 마요네즈 김밥	2,500	"	
참치 고추장 김밥	2,500	"	
매운 고추김밥	2,000	"	
샐러드 김밥	2,000	"	
분식류			
오뎅	1,500	"	
우동	1,500	"	
카레우동	2,500	"	
라면	2,000	"	
떡 라면	2,500	"	
치즈라면	2,500	"	
짜뽕라면	2,500	"	
떡볶이	2,000	"	
치즈 떡볶이	2,500	"	
말팔랑이 떡볶이	2,500	"	
라볶이	2,500	"	
칼국수	3,000	"	
얼큰 수제비	3,000	"	
쫄면	3,000	"	
비빔국수	2,500	"	
떡만두국	3,500	"	
김치 떡만두국	3,500	"	
고기만두	2,000	"	
김치만두	2,000	"	
짜장	2,500	"	
해물우동	3,000	"	
해물볶음 우동	3,500	"	
양식류			
돈까스	3,000	"	



순살 돈까스	3,500	"
쫄 스파게티	2,500	"
카레라이스	3,000	"
오무라이스	4,000	"
이탈리안 돈까스	3,500	"
깨순이 스페셜	4,500	"
치킨 철판가스	4,000	"
고구마 돈까스	4,000	"
단호박 돈까스	4,000	"
한식류		
짬뽕밥	3,500	"
잡채밥	3,500	"
야채 볶음밥	3,500	"
김치볶음밥	3,500	"
새우볶음밥	3,500	"
낙지볶음밥	3,500	"
소고기 볶음밥	3,500	"
김치찌개	3,500	"
참치찌개	3,500	"
된장찌개	3,500	"
순두부찌개	3,500	"
부대찌개	3,500	"
오징어 덮밥	3,500	"
재육덮밥	3,500	"
비빔밥	3,500	"
돌솥비빔밥	4,000	"
낙지 비빔밥	4,000	"
육개장	4,000	"
갈비탕	4,000	"
소내장탕	4,000	"
청국장	3,500	"
소뚝불고기	4,500	"
뚝배기 알밥	4,500	"
김치고등어 조림	4,000	"
물냉면	3,500	"
비빔냉면	3,500	"
콩국수	3,500	"
소바	3,500	"
사리추가	1,000	"
공기밥	1,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김밥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깨순이 김밥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1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가맹본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깨순이 김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 ②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의 기간

[깨순이 김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제1항의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제1항의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제47조제1항의3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47조제1항의4
○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7조제1항의5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7조제1항의6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가맹점사업자가 깨순이 김밥의 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제3조
2.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 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의2
3.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의 부족액을 보충하지 않는 경우.	제9조 4항
4.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료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 1항
5.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을 위한 위생교육, 영업 허가증 등 면허	제14조1항.제2



나 인, 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항
6.가맹점사업자가 교육, 훈련에 불참 하는 경우.	제17조
7.가맹점사업자가 필수상품을 깨순이 김밥에서 공급받지 않고 사입하는 경우.	제22조
8.가맹점사업자 깨순이 김밥의 운영규정이나 품질기준 및 레시피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9.가맹점사업자가 깨순이 김밥이 정한 영업시간 1주7일 매월28일 이상 영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26조
10.가맹점사업자가 깨순이 김밥이 정한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7조
11.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제29조
12.가맹점사업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13.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14.가맹점사업자가 회계관련 장부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15.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38조
16.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깨순이 김밥의 승낙 없이 제3자의 명의로 깨순이 김밥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2조
17.가맹점사업자가 깨순이 김밥이 배포한 가맹점운영관리 규정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허락없이 교육자료등을 인쇄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53조
18.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개점 승인을 받지 않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자로부터 정보공개서등 문서에 정해진 초도 상품 등 기타 설비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나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1항.2항
19.가맹점사업자가 각종금전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제48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	제48조제2항



차가 개시된 경우	의1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제48 2항의2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8 제2항의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8 제2항의4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8 제2항의5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 제2항의6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8 제2항의7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8 제2항의8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8 제2항의9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등 가맹사업과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51 제3항의1
○ 가맹본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51 제3항의2

재 조 정 절 차	동 의 절 차
계약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수정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



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교육 → 기존 계약 승계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대리운영	대리운영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깨순이 김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김밥류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부 (063-222-7353)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깨순이 김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주7일. 월28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부 (063-222-73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월	본사 관리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3월	본사 관리팀	
품질 관리(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월	본사 관리팀	
복장과 용모(1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복장과용모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월	본사 관리팀	
회계 자료(1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월	본사 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첨3]과 같은 가맹점 관리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깨순이 김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전국단위공동판촉행사	팸플렛, 카달로그 제작비용 100%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 하는 경품 · 기념품 등의 비용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가맹점별 매출액은 당사가 집계한 원 · 부자재의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그 비율에 따라 최종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촉활동을 위한 팸플릿 전단, 카달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가맹본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점포개설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3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맹점의 직전 3개월간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한 월평균 매입액 X 3% X 잔여기간(월)

2)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7일 내외	[9~11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6~3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3~21(3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0	
가맹금 납부	- 본부 계좌로 입금 -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	D-19~18(2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17(1일)	
인테리어 공사 (간판설치비)	- 공사 실시	D-16~2(15일)	
비품구입	- 주방용품	D-19~13(7일)	
초도상품	- 초도상품, 기타개점 비용	D-19~13(7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6~3(1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지정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독창성유지에 대한 지도. 2.고객서비스, 영업방식, 매뉴얼이나 상품의 사용 등에 관한 지도. 3.신규고객 창출 및 영업 활성화 방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63-222-7353



	법에 대한지도 등	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점 부담 (요청 시 기간등을 고려하여 실비 산정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063-222-7353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깨순이 김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Ⅶ.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본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실기교육 상품교육, 서비스 교육	실습교육 집단강의	사업개시 16일 이전	필수 교육
정기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1개월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통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재교육	가맹점 사업자 재교육(보수교육)	집단강의	재교육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 실시	해당 가맹점사업자 필수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깨순이 김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교육	14일(112시간)	1,100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규교육	1일(8시간)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재교육	1일(8시간)	실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교육을 소집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 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기한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직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	/

가맹본부 법인 명의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해당없음

3. 직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해당없음



- 끝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팀(063-222-735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kimbab-1000won.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별첨 1] 2023년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2022년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2021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